#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30

발의연월일: 2021. 9. 13.

발 의 자:조응천・김영진・김정호

오영환 · 우원식 · 유기홍

이상헌 · 조승래 · 조오섭

최기상 · 홍기원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정도의고질적인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충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종종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관련 제도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사후 확인제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 제41조의2 신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성능등급 인정"을 "성능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 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성능등급 인 정과 제41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인정 또는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은"을 "성능 인정·검사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정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의"를 "성능 인정·검사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능등급 인 정기관이"를 "성능 인정·검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능 등급 인정기관으로"를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제3항에 따른 성능인정기준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업무를"을 "인정·검사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 "성능등급의 인정현황"을 "성능의 인정·검사현황"으로 한다.

- ②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 2. 제41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대한 연구개발
- 4. 그 밖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 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 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 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인정 등) 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 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성능등급 인정과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2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전문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을 인정 또는 검사하는 기관(이 하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 기관"이라 한다)-----②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 <신 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 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2. 제41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에 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바닥충격음 차단성 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

-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③ (생략)
-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③</u> <u>성능 인정·검사</u>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능인정기준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성능 인정·검사</u>
<u>기관의</u>
,
<u>⑥</u>
<u>성능 인정·검사기관이</u>
1
<u>성능 인</u>
<u>정·검사기관으로</u>
2 제3항에 따른 성능인정기주

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 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한 경우

- 3. <u>제4항</u>에 따른 바닥충격음 <u>성</u> <u>능등급 인정기관</u>의 지정 요 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u>인정업무를</u>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설>

<u>및 제41조의2제1항에</u>	따흔	<u>르</u>
성능검사기준		_
<u> </u>		
3. <u>제5항</u>		<u>8</u>
능 인정·검사기관		_
4		
4		_
<u>인</u> 정·검사업무를	<u>-</u>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	충 Z	곀
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의		
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u>3</u> 5
을 지원할 수 있다.		
8		_
 성능 인정·검사기관		_
- <u>성능의 인정·검사현황</u>		-
		-
		_
	•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	검스	<u>.}</u>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트	<u>}</u>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 7	님
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u>']</u>
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	검스	<u>.}</u>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	व्ये ०	<u> </u>

한다.

- ②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 닥충격음 성능 인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